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333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강동길, 김기덕, 김성준,
김용일, 김인제, 민병주,
박승진, 봉양순, 성흠제,
송재혁, 아이수루, 이민옥,
, 이병도, 이봉준, 이소라,
이영실, 이원형,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최기찬, 최재란,
한·신 의원(25명)

1. 제안이유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완화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안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3101200000004

비대상사유서

요청인 : 강동길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박지영 주무관

접수일 : 2023.10.12.

회신일 : 2023.10.13.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호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박지영

☎ 02-2180-7952
e-mail : 7magic7@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